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9. 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 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 이행을 위한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시장의 관리,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나. 시장의 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 다.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12조)
- 라.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 마.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 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20조)
- 사.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28조)
- 아.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제34조)
-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 ~ 제39조)

□ 참고사항

- 가. 조례안 : 붙임
- 나.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다.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 : '09. 1. 16 ~ 2. 5(20일간) 실시,
제출된 의견 없음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평창군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8.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시장, 시장 활성화 구역과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과 시장전체가 지붕 가

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도 상인으로 본다.

2. “시장 활성화 구역”이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군내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내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내에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 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군내 시장,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관리) ①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등록시장으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지정할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 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상호 분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 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 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에 따른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1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시장의 개설과 관리

제1절 인정시장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 경우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직접 영업을 하는 상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절 시장활성화구역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범위) ①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은 2개 이상

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서로 통합하여 일정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고,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3절 임시시장

제13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① 임시시장은 군수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5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4절 농어민직영매장

제16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7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절 시장관리자

제1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군수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은 제18

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

제21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상인회의 대표자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 등록 등) ①제21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登記함으로써 설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에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대표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4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화장실 등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도·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

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한 후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와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도·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국가가 도·군 및 상인조직과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이 상인조직에게 있을 때에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활성화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군 소유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 상인과 시장, 시장활성화구역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3조(지도·감독)**
- ①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군수는 제2항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 ①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제3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 ①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6조제2항에 따른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세부과징수규칙」을 따른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정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 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평창군 징수관(인)			평창군 징수관(인)			평창군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 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겠습니다.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평창군 징수관(인)						평창군 징수관(인)						평창군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60mm
신문용지 54kg/㎡

A80×60mm
신문용지 54kg/㎡

A80×60mm
신문용지 54kg/㎡

A80×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38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p>「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청인 (인)</p> <p>평창군수 귀하</p>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p style="margin-left: 40px;">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p> <p style="margin-left: 40px;">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관계법령 발췌

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을 등록여부, 개설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관리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활성화구역에 대하여 제20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3. 지역주민, 인근지역 농어민 또는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공공기관·단체가 정해진 날에 농수축산물·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의 매매·교환을 하기 위한 경우
4. 대규모의 행사에 따라 관람객·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실업자·노년층 및 농어민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 (상인회) ①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⑨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시장관리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 ②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 조직
 2.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 ③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주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인정시장의 기준)**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②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③제2항에 따라 인정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해당구역이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인정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자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군·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0조제1항

제9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 나. 시장 건물 내·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개량
 -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개량
 - 다. 전주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
 - 라. 냉·난방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개량
-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 4. 공설시장 건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 ④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㉞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시장활성화구역의 시장 및 상점가를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 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㉞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이상의 도매 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8.10.2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 2. (생략)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및 조산소
 -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 기원
 -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

공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

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치단체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 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㉔ 공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행정 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이하생략)

제22조(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제27조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

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④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 위탁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신설 2006.12.30>

③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 7.(생략)
8.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9. ~ 16.(생략)

제14조(사용료)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제17조(사용료 면제) ① ~ ③(생략)

④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동항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3조제3항제8호

8.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 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2.~5. (생략)
 6. 군 관할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6조별표 규정에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평창군 주차장 및 설치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평창군 주차장 및 설치관리 조례시행규칙

제7조(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3.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수지 계산서
5.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

제8조(주차장 관리) ①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방지
3. 기타 필요한 지시사항

- ②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조례 제5조에 의한 주차장 표지판 및 이용자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주차장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안내표지판에 관리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00.1.21>
- ④공영주차장 관리자는 특정 자동차에게 고정 주차장소를 제공하거나 장시간주차를 방지하여 가능한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주차장 내의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